

회원 가입 안내

우리협회(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KIFFA :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로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을 기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제물류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특전]

★ 붙임 참조

[입회절차]

▶ 입회신청서 제출 및 입회금(탈퇴시 환불안됨) 납부

▶ 입회금(가입금) : 5,000,000원정(완납)

▶ 협회비 : 전년도 매출기준별 차등 청구

※ 가입년도는 월회비 6만원 적용, 가입한 달은 면제

구분	매출액(최근 2개년 평균액)	월회비	비고
‘가’그룹	5,0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법인	70만원 (연 840만원)	연납
‘나’그룹	1,000억원 이상 ”	40만원 (연 480만원)	
‘다’그룹	500억원 이상 ”	20만원 (연 240만원)	
‘라’그룹	70억원 이상 ”	10만원 (연 120만원)	
‘마’그룹	외부감사 비대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 70억원 미만 법인	6만원 (연 72만원)	

입 회 신 청 서

○ 상 호(업 체 명) :

○ 성 명(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주사무소) :

당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받은 업체로서 귀회 정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입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서약서(별첨 제 1 호 서식)
2. 업체현황(별첨 제 2 호 서식)
3.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 이력서(사진첨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6. 입회금 지정은행 납입 영수증
★ 하나은행 272-810016-69804 한국국제물류협회
7. CMS 출금이체 신청서(협회비 납부)
8. 사업자등록증

(제2호 서식)

업 체 현 황

업 체 명	각 시·도 등록 제 호, 등록일자 : 년 월 일							
	국 문							
	한 문							
	영 문							
4CODE : (세관신고용)								
대 표 자	한 문				영 문			
	연락처				Email			
교육 담당자	성 함		연락처		Email			
회비 담당자	성 함		연락처		Email			
주 소	본 사							
		Tel.			Fax.			
	부 산 및 기 타							
		Tel.			Fax.			
	인 천 및 기 타							
		Tel.			Fax.			
Internet : http://				E-mail :				
임직원 현황	직급별	임 원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사 원	계
	인 원							
기타 영업소현황 (해외지사 포함)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

수납기관명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대표자	원제철	사업자등록번호	102-82-09185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307호	수납 요금종류	협회비
수납 일자	매월 1일	수납 금액	차등 청구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명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담당자명		예금주와의 관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인 또는 서명

- 주) 1.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의 특전

○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의 각종 특전

- KIFFA & FIATA B/L 양식 등 각종 양식 사용 가능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할인혜택(개별가입 대비 25% 할인)
- 각 과정별 연수교육
 - 단과반/기초반 교육 : 해상포워딩, 항공포워딩
 - IATA Diploma 교육 : Introductory,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교육
 - 기타교육 : 실무통신영어, 세일즈 스킬업, C/S예절교육, 클레임 사례교육, 벌크카고 및 프로젝트화물 취급실무 과정 등
 -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전액 무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계 취업연계
- 교육비 중 40%~50%환급(고용보험 환급)
- 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국토부·해수부, 4.5억/년)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해양수산부, 4.4억/년)
- 미국 FMC 등록업무 지원
-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 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지원
- KASA(Korea-America Shippers Association) 운영 및 미국지역의 운송서비스 지원(경쟁력 있는 rate 및 정보제공 등)
- 국제물류업체 전용 국제물류센터 건립 지원 및 정보제공
- 해상/항공운송관련 제사항(제도/물류시스템) 개선 및 지원
- 정부사업 및 화주 공개입찰 관련 실적증명서 발급
- 해상/항공운송관련 제사항(제도/물류시스템) 개선 및 지원
- 각 과정(해상/항공 등)별 연수교재 등 국제물류 관련 전문 교재
- 운임장기미납업체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지원
- 국제운송 클레임 관련 무료 법률상담(1시간 - 10개사/월) 및 세무상담
- 국제물류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KMI 지원)
- 국제물류업계(포워딩업계) 대변(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관세청, 선사·항공사 등) -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 개선('14. 6.18) 등
- 각종 국제회의(FIATA, FAPAA, CCTT, UN ESCAP) 참석을 통한 한국 포워더의 위상 제고 등

B/L 사용시 주의사항

* KIFFA(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각종 양식 사용 가능

- KIFFA B/L(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KIFFA FCR(Forwarders Certificate Receipt)
- KIFFA SWB(Seaway Bill)
- KIFFA 표준 대리점 계약서(Standard Agency Agreement)

* FIATA(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각종 양식 사용 가능

- FIATA MT B/L(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FIATA FCR(Forwarders Certificate Receipt)
- FIATA SDT(Shippers Declaration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등

⇒ 상기 양식(form)에는 협회 마크(KIFFA)가 인쇄되어 있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업체, 비회원사)가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우리 협회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하였음(2008.2.14.).

○ 상표법에 따른 벌칙

-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포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3.21.>

- 상표법 제236조(몰수)

-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표법 제23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무등록업체의 영업에 따른 벌칙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 무등록업체의 B/L 발급에 따른 벌칙

- 형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